ZINUS

지누스

협력사 행동규범

[서문]

지누스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협력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및 개선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정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법률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가격 인상, 시장 분할, 출고 조절 등의 담합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는 불가 합니다.

③ 지적재산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⑤ 신원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등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신원보호 절차를 운영해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협력사는 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인신매매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단 법규에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근로 시간 협력사는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③ 아동 근로자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④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내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 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⑥ 다양성 인정 협력사는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이 없는 작업장을 조 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전경영]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원청사와 협력하여 안전제일 문화를 정착하고 잠재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산업안전 협력사는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 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 관리적 개선을 통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② 비상 사태 대비 협력사는 비상사태 발생 時, 유형 별 대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상황종료 이후 사태파악 및 평가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수작업,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드는 작업, 오래 서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④ 산업 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적절한 휴식 및 스트레칭, 인력배치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⑤ 위생 및 시설 제공 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⑥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안전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경경영]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사업 활동에 기인한 중대한 환경 이슈를 파악, 제어, 저감하기 위하여 ISO 14001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 및 실행하여야 합니다.

①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의무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고 자원 및 물(상수, 우수 등)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③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폐기물 및 폐수 관리 협력사는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운영상 산업 공정, 위생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 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 공정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⑤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나 연무제, 부식제, 미립 분말, 오존 파괴 물질, 공정 중 발생한 연소 부산물은 관련법과 규정상 필요한 경우 배출 이

전에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⑥ 제품 함유 물질 규제 및 표기 협력사는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⑦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⑧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협력사는 식품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삼림과 수자원 등 천연자원은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사업 추진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천방법]

협력규범 운영에 대한 자가평가를 수행하여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후 만약 격차가 있을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활동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동규범 실천 중 이슈 발생 시, 지누스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내부 정책 및 지침에 따라 행동규범 준수 및 개선 의지 표명
- 사회 및 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한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 수립
- 주기적 자가평가를 진행하여 협력규범 내재화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 구축
- 전 임직원 대상 행동규범 교육 및 사전 공유하여 책임감 부여